

7월 24일, 미 122조 글로벌 관세 만료 트럼프 다음 카드는?

[현장 특파원]

301조·232조 활용한 국가·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 (11p)

[통상 현안 체크]

“USMCA 연장 대신 매년 재검토” 흔들리는
북미 자유무역 (15p)

[오피니언: 미국 통관]

미국, 수입통관 제도 전면 개편 예고 “해외 수입자는
간이통관 제한” (18p)

[이주의 초점]

한국·몽골 CEPA 원칙적 타결... 구리·희토류 무관세로
들어온다 (4p)

[위클리 뉴스]

고환율 장기화에 14.9조원 긴급 투입... 수입기업 지원
대폭 확대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 최고 31.55% 덤핑방지
관세 확정 (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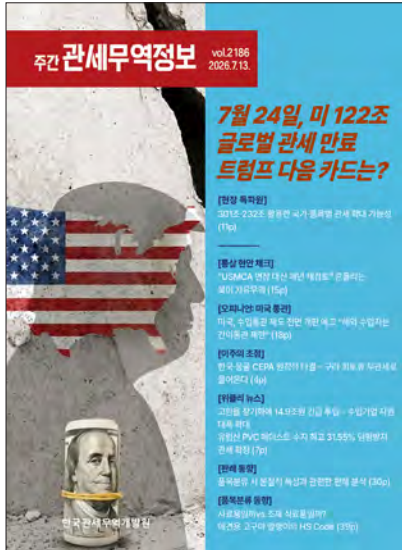
[판례 동향]

품목분류 시 본질적 특성과 관련한 판례 분석 (30p)

[품목분류 동향]

사료용일까vs.조제 식료품일까?

애견용 고구마 말랭이의 HS Code (39p)



※ AI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7월 13일(통권 제2186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 구리·희토류
무관세로 들어온다

07 Weekly News

현장특파원

- 11** 7월 24일 미 122조 글로벌 관세 만료
트럼프 다음 카드는?

통상 현안 체크

- 15** “USMCA 연장 대신 매년 재검토”
흔들리는 북미 자유무역

오피니언

- 18** 시선, 미국 통관
앤드류 박 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 LA 총영사관 공익관세사, ITC
글로벌통상연구소장
“해외 수입자 간이통관 막는다”
미국, 수입통관 제도 전면 개편 예고

관세행정실무해설

- 21** 관세행정안내
한·ASEAN FTA와 RCEP 누적기준 적용을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
- 28** 질의응답사례
가공한 꽃 ‘프리저브드 플라워’의 수입요건

판례동향

- 30** 관세판례해설
품목분류 시 본질적 특성과 관련한 판례 분석

품목분류동향

- 39** 세번 바로잡기
사료용일까vs.조제 식품용일까? 애견용 간식의
HS Code
-

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 구리·희토류 무관세로 들어온다

몽골은 화물차, 자동차부품, 의약품, 화장품 관세 발효 즉시 철폐

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과 유통·물류, 산업·투자 협력을 제도화하고 상품시장 개방을 통해 교역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유통물류 협력체를 신설하고 민간에서는 핵심광물과 소비재, 디지털 분야에서 총 21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도 본격화했다.

7월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민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한·몽골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상품시장 개방과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합의해 사실상 협상은 종료됐으며, 일부 기술적 사항은 실무 차원의 협의를 거쳐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국과 몽골의 교역은 2021년 4억 1,000만달러에서 2025년 6억 9,000만달러로 증가했지만, 전체 교역 규모는 아직 제한적이다. 산업부는 몽골이 구리 매장량 세계 12위, 희토류 세계 2위권의 자원 부국인데다 연 5% 안팎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공급망 협력과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품목수 기준 96.3%, 수입액 기준 94.5%, 몽골은 각각 94.4%, 90.9%를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몽골산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관세(2~5%)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해 우리 기업의 핵심 원자재 조달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을 협정에 명문화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몽골의 주력 수출품인 캐시미어 의류에 대한 관세도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한다. 농·임산물 가운데 염소고기와 유제품(치즈·버터)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잣은 신선잣과 냉동잣을

구분	한국 양허				몽골 양허			
	품목수(개)		수입액(100만달러)		품목수(개)		수입액(100만달러)	
즉시 철폐	8,115	71.9%	39.0	93.6%	5,502	86.5%	330.8	88.5%
무관세	2,239	19.8%	26.3	63.0%	78	1.2%	8.7	2.3%
유관세	5,876	52.0%	12.8	30.6%	5,424	85.3%	322.1	86.2%
5년 내 철폐	8,861	78.5%	39.1	93.7%	5,641	88.7%	338.2	90.4%
10년 철폐	2,014	17.8%	0.4	0.9%	362	5.7%	1.7	0.5%
철폐 소계	10,875	96.3%	39.4	94.5%	6,003	94.4%	339.9	90.9%
TRQ	2	0.0%	0.2	0.4%	9	0.1%	5.3	1.4%
철폐+TRQ	10,877	96.3%	39.6	94.9%	6,012	94.5%	345.2	92.3%
양허 제외	416	3.7%	2.1	5.1%	347	5.5%	28.8	7.7%
전체	11,293	100.0%	41.7	100.0%	6,359	100.0%	374.0	100.0%

출처: 산업통상부

각각 10톤 한도로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해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염소고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수입금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는데, 현재 몽골은 수입금지 지역에 해당한다. 쌀과 천연꿀, 신선 감자·양파·마늘 등 국내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했다.

우리 기업의 대몽골 수출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몽골은 화물차와 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으며, 라면과 조미김, 연식 4~6년 중고차는 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화장품은 즉시 무관세가 적용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K-뷰티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실제 대몽골 화장품 수출은 2023년 3,100만달러(전년 대비 29% 증가), 2024년 3,700만달러(19% 증가), 2025년 4,500만달러(22% 증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몽골 내 수요가 높은 궤련담배는 기존 30% 관세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된다. 2021~2023년 몽골의 국가별 궤련담배 평균 수입 비중은 한국이 52%로 가장 높고 러시아(21%), 일본(9%)이 뒤를 잇고 있어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K-뷰티와 K-푸드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했다. 반면 농축수산물 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 한·몽골 수입액 상위 품목 양허 현황 ●

순위	한국 양허(대몽골 주요 수입품)				몽골 양허(대몽골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 (100만 달러)	한국측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액 (100만 달러)	몽골측 양허
1	저지·카디건 (캐시미어 편물)	13	3.6	즉시철폐	궤련(담배 함유)	30	34.2	즉시철폐
2	형석 가루	2	1.9	즉시철폐	화물차 (디젤, 5톤 이하)	5	17.0	즉시철폐
3	녹각	20	1.2	양허제외	윤활유와 그 밖의 기름	5	16.9	즉시철폐
4	술·스카프 (양모 편물)	13	0.7	즉시철폐	항공기용 제트연료유	5	16.8	즉시철폐
5	육(肉) 추출물	30	0.7	양허제외	건설중장비 (메커니컬서블 등)	5	15.6	즉시철폐
6	술·스카프 (기타 방직용 섬유)	8	0.6	즉시철폐	기타 음료	5	7.9	양허제외
7	술·스카프(양모)	8	0.6	즉시철폐	맥주	25	7.6	양허제외
8	조유(粗油)	5	0.5	즉시철폐	기타 화장품	5	6.9	즉시철폐
9	여성 바지 (양모 편물)	13	0.5	즉시철폐	기타 면류 (라면 등)	5	6.4	5년철폐

순위	한국 양허(대몽골 주요 수입품)				몽골 양허(대몽골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 (100만 달러)	한국측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액 (100만 달러)	몽골측 양허
10	술·스카프 (기타 편물)	13	0.4	즉시철폐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 축전지	5	6.3	즉시철폐
11	여성 드레스 (양모 편물)	13	0.3	즉시철폐	기타 소스류 (된장 등)	5	6.1	즉시철폐
12	티셔츠(양모 편물)	13	0.2	즉시철폐	의약품(기타)	5	5.0	즉시철폐
13	제트연료유	3	0.2	양허제외	화물차(디젤, 5톤 초과 20톤 이하)	5	4.4	즉시철폐
14	저지·카디건(기타 방직용 섬유 편물)	13	0.2	즉시철폐	의약품 (기타, 액상)	5	4.1	즉시철폐
15	정제 구리(음극)	3	0.2	즉시철폐	위생타월·냅킨 등	5	4.1	즉시철폐
16	여성 오버코트 (양모 편물)	13	0.2	즉시철폐	등유	5	3.9	즉시철폐
17	저지·카디건 (양모 편물)	13	0.2	즉시철폐	면역물품(소매용)	5	3.6	즉시철폐
18	소(牛) 지방	2	0.2	즉시철폐	철구조물(기타)	5	3.6	즉시철폐
19	여성용 기타 의류 (기타 방직용 섬유)	13	0.2	즉시철폐	승합차(10~23인)	5	3.6	즉시철폐
20	오버코트·레인코트 (양모)	13	0.2	즉시철폐	중고의류·물품	5	3.5	양허제외
	20대 수입소계		12.8		20대 수입소계		177.6	
	수입합계		41.7		수입합계		374.0	

품목수 기준: (한국) HSK 2023, (몽골) HS 2023 / 수입액 기준: 2021-2023년 평균, 관세율: 2023년 WTO MFN 실행세율(출처: 산업통상부)

CEPA와 함께 정부 간 유통·물류 협력도 제도화했다. 산업부는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한·몽골 유통물류 협력 MOU’를 체결하고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유통물류 정책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품 공동개발과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인증·통관 애로 해소, 인력 교류 등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몽골 현지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콜드체인 등 물류 인프라 개선, 세관 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협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같은 날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핵심광물·에너지, 소비재·유통, 디지털·AI 분야에서 총 21건의 MOU가 체결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몽골 기관과 핵심광물 탐사·추출·가공기술 협력에 나섰고, 한화투자증권은 광물자원과 인프라 투자 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몽 CEPA는 상품 교역 확대뿐 아니라 산업과 공급망, 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환율 장기화에 14.9조원 긴급 투입... 수입기업 지원 대폭 확대

고환율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14조 9,0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 공급과 함께 무역보험·환변동보험 확대, 관세·세정 지원, 환리스크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다. 특히 기존 수출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7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높은 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과 생산비 증가,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62.7%가 고환율 피해를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수입기업은 응답 대상 전 기업이 피해를 호소했다. 원부자재 수입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늘고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응답도 71.2%에 달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수출 증가 효과보다 커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해 확보했던 정책금융 잔여 여력에 신규 재원을 더해 총 14조 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고환율 경영애로 전용 트랙'을 신설해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은 매출 감소 요건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금리 우대와 특별대출을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을 100%까지 높인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수입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해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원자재 수입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보증 한도는 최대 2배로 확대하고, 환변동보험 규모도 1조 3,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고 가입 대상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넓힌다.

아울러 관세를 비롯한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보세공장 내 생산품 과세 신청 시점을 생산 이후 수입신고 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수출바우처에 고환율 피해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무역보험료 지원 확대와 환리스크 컨설팅, 비금융 컨설팅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수출바우처 3차 모집을 진행 중으로, 470억원 규모로 약 1,2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환율로 경영부담이 커진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존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중 고환율 피해가 있는 기업도 추가 한도 지원을 허용해 현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수출바우처 사업 ●

지원트랙	지원 대상	지원 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0달러 미만	3,000만원	50~70% *매출액 규모 따라 차등 적용 (100억원 미만 70%, 100~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달러~10만달러 미만	3,000만원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4,500만원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만~500만달러 미만	7,000만원	
수출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1억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세정지원은 기존 수출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 수입 기업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고환율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필요한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승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과 무역보험, 세정, 컨설팅을 연계한 종합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의 환리스크 대응 능력을 높이고, 정책자금 집행 상황과 현장 애로를 점검해 필요시 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 최고 31.55% 덤핑방지관세 확정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페이스트 수지에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관세는 오는 8월 5일부터 5년간, 2031년 8월 4일까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주)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부터 조사한 결과, 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올해 2월 25일부터 25.79%~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으나 무역위는 지난 6월 2일 확정 부과를 건의했고 재경부는 8월 5일 이를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은 HSK 제3904.10-0000호에 해당하는 PVC 페이스트 수지로, 가소제와 혼합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한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다. 인조가죽, 벽지, 바닥재, 장갑 등 생활·산업용 제품에 폭넓게 쓰인다.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공급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확정덤핑방지관세율(%)
독일	1.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Co. KG) 및 그 관계사	42.81	31.55
	2. 그 밖의 공급자	30.60	30.60
프랑스	1. 켄 원(KEM ONE) 및 그 관계사	37.68	31.55
	2. 그 밖의 공급자	37.68	31.55
노르웨이	1.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 및 그 관계사	25.79	25.79
	2. 그 밖의 공급자	25.79	25.79
스웨덴	1. 이노빈 무역(Inovyn Trade Services SA) 및 그 관계사	28.15	28.15
	2. 그 밖의 공급자	28.15	28.15

출처: 재정경제부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는 확정조치 33건과 잠정조치 3건을 합쳐 총 36건으로 늘었다. 올해 PVC 페이스트 수지를 포함해 열간압연 제품(일본·중국), 산업용로봇(일본·중국), 부틸글리콜에테르(사우디아라비아), 섬유관(태국), 단일모드 광섬유(중국), PET 필름(중국·인도) 등 7건이 확정됐고, 이음매 없는 동관(태국), 아크릴산 부틸(중국), 아연 표면처리 강판(중국) 3건에는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 김성은 기자 |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국에 아르헨티나·EU 4개국 추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교환 대상국에 아르헨티나와 유럽연합(EU) 4개국을 추가했다. 민원인이 직접 전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24시간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시작하며 농산물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검역본부는 ePhyto 교환 대상국에 아르헨티나와 EU 4개국(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몰타)을 추가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1년 미국을 시작으로 뉴질랜드, 호주, 칠레, 태국 등으로 확대돼 온 전자증명서 교환 상용화 국가가 기존 17개국에서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ePhyto는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 발급하는 검역증명서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표준양식에 맞춘 전자문서로 작성해, 수입국의 식물검역기관에 국제 전산망을 통해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종이 검역증명서는 국제우편이나 특송 등으로 전달돼 상대국에 도착하기까지 수일이 소요됐으나, 전자증명서는 발급 즉시 상대국 검역당국으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검역증명서 발급과 제출에 드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통관 절차가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또한,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함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위·변조 위험을 방지하고 검역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검역본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농산물 수출입업체 등 민원인이 전자증명서의 전송 및 수신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전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검역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에서 24시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 서준식 기자 |

관세청, 무역안보 침해 범죄 7,703억원 적발... 5개월 만 지난해 적발액 넘어

관세청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단속을 강화한 결과, 올해 5월 말 기준 적발 규모가 7,703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액인 6,556억원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7월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무역안보 침해 범죄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5월 기준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 규모는 5,27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4,573억원)을 5개월 만에 넘어섰다. 전략물자 불법수출도 2,43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액(1,983억원)을 상회했다.

관세청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국가별 관세 차이를 악용하거나 수출통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우회수출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첨단산업을 겨냥한 대형 불법수출 사건이 다수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외국산 반도체 장비 23만점에 'Made in Korea' 표시를 부착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수법으로 미국에 우회수출한 사건이 적발됐다. 미국으로 수출 시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되나 한국산으로 수출 시 0%가 적용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한 A국 수출 시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이차전지 제조설비를 B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실제로는 A국으로 이전하려 한 불법 우회수출 사건도 적발됐다. 적발 규모는 4,768억원으로,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안보 침해 범죄 가운데 단일 사건 기준 최대 적발 금액이다. 이 밖에도 고성능 AI 서버 816대를 수출허가 없이 해외로 불법수출한 업체도 적발됐다. 적발 규모는 2,500억원으로, 산업부가 전략물자로 지정한 고성능 AI 서버를 여러 국가를 경유해 우회수출하려 한 국제 조직의 범행 일부가 확인됐다.

관세청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가 「관세법」 위반을 넘어 우리나라의 공급망 신뢰성과 국제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수출입 데이터 분석과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 및 국가 핵심산업을 겨냥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7월 24일 미 122조 글로벌 관세 만료 트럼프 다음 카드는?

301조·232조 활용한 국가·품목별 관세 확대될 가능성

오는 7월 24일 미국 무역법(Trade Act) 122조에 근거한 10% 임시 글로벌 관세가 종료된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도 끝나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답은 “아니다”이다.

임시 글로벌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였지만, 법률상 최대 150일까지만 시행할 수 있는 한시적 관세일 뿐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어느 정도의 관세율을 부과할지가 한국 수출기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세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한 301조 조사 결과가 올해 하반기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7월 7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개최한 ‘트럼프 관세정책 변화와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무역협회와 미국 회계법인 아프리오(Aprio),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관세법인 크로스웨이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국내 기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4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가장 먼저 미국의 관세정책을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트럼프 정부 4년만 버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다”며, “글로벌 통상질서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현재의 통상환경을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추구하던 시대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우선하는 시대로의 전환기로 규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물류 차질을 거치면서 기업들이 더 이상 최적화된 글로벌 공급망만으로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효율보다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통상정책 흐름을 보면 이러한 변화는 특정 행정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한 대중국 301조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됐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자국 제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 정책을 이어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는 동맹국에 대한 예외 적용이 크게 줄고, 국가별·품목별 관세 대상

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라기보다 미국 산업 보호와 경제안보 중심의 통상정책이 장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122조 글로벌 관세 종료된 후에는 301조와 232조가 핵심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122조 글로벌 관세가 종료된 이후 미국이 선택할 법적 수단이다. 조성대 실장과 조장환 아프리오 변호사는 공통적으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사실상 122조 임시 글로벌 관세의 뒤를 잇는 후속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강제노동을 근거로 한 301조 추가관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12일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시작한 뒤 6월 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 등에 12.5% 추가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했다. 캐나다, EU, 영국 등 미국과 강제노동 대응체계를 구축했거나 관련 합의를 체결한 국가에는 10% 수준의 관세가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해당 국가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과 유통을 차단하는 제도가 충분한지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조 실장은 “한국이 강제노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관세 부과 이유”라며, “정부와 업계가 적극 소명하고 있으며 최대 1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USTR은 7월 6일 서면 의견 접수를 마감했고, 7일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무역협회는 지난 6일(현지시간) 윤진식 회장 명의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관세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시행 유예가 어렵다면 관세율을 10%로 낮추고, 강제노동 연루 위험이 낮거나 미국 상거래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근거가 없는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트럼프 관세는**
집중호우
중장기 통상환경 변화는
기후변화 ”

사진 및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협회는 “특정 한국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 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례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요청 근거로 지적하며, “단지 공식적인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제품에 광범위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해당 조치는 미국이나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본지에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동향 등 통상 정책에 관해 기고[제2181호(2026.6.1.) 오피니언]하는 이정운(Pierce Lee) 통상 전문 미국변호사는 “USTR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약 60명의 증인 진술과 500건의 의견서 및 반박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힌 만큼 최종 조치는 상당한 정책적 무게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과잉생산 조사도 또 다른 변수

강제노동 조사와 함께 또 하나의 변수는 구조적 과잉생산(Overcapacity)에 대한 301조 조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당시 지속적인 미국의 무역적자가 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과 구조적 과잉생산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USTR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EU, 일본, 베트남, 인도, 멕시코, 대만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 301조 조사는 개시 이후 최종 조치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지만,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122조 관세가 종료되기 전에 주요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장환 변호사는 122조 글로벌 관세가 종료된 이후 미국이 301조를 활용해 IEPA에 따른 상호관세 수준을 사실상 복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IEPA 관세를 232조와 301조로 재구성하면 미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 기존 관세 수준을 사실상 복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301조의 경우 관세가 중첩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 변호사는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치의 경우 현재까지는 232조 관세만 명시적으로 중복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다른 301조 관세와의 관계는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향후 별도의 면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여러 종류의 301조 관세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조장환 변호사는 현재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특정 국가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을 대상으로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가에서 제조한 부품을 중국산으로 보고 301조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강제노동에 따른 301조 관세가 발효될 경우 232조 품목관세와는 함께 적용되지 않지만, 301조 대중국 관세는 중복 적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계속 확대되는 232조 품목관세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품목관세 역시 확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오의 조 변호사는 “현재 분기별로 품목관세를 추가하는 추세”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법을 개정하는 등 업데이트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품목관세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이어 의약품이 새로운 대상이다. 미국은 특허 의약품과 일부 원료의약품(API)에 대해 7월 31일부터 최대 10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시에는 관세를 약 20% 수준으로 낮추거나 최혜국대우(MFN) 적용 대상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일명 ‘복제약’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 복제약’ 바이오시밀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이에 대해 “기업 단위가 아니라 제품 유형과 원산지를 기준으로 정책이 적용되므로 기업별 사업구조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상업용 항공기와 제트엔진, 폴리실리콘, 드론 및 부품, 풍력터빈, 의료기기, 산업용 로봇과 기계 등도 현재 232조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232조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122조와 301조를 활용한 ‘플랜 B’, ‘플랜 C’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관세는 집중호우·중장기 통상환경 변화는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단기적인 정책 변화가 아닌 공급망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받아들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중 전략경쟁 역시 새로운 변수다. 미국이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동안 중국은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양국 공급망 사이에 위치한 만큼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 역시 통상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내 제조업 육성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초당적 기조가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대 실장은 이날 발표를 마무리하며 미국 통상환경의 변화를 기후변화에 비유했다. 그는 “트럼프 관세는 집중호우와 같지만 지금의 통상환경 변화는 기후변화에 가깝다”며, “비가 그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후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122조에 따른 임시 글로벌 관세는 7월 24일 종료되지만, 전문가들은 122조라는 법적 수단이 종료될 뿐 관세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성대 실장의 조언처럼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세 재편’에 면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성은 기자 |

“USMCA 연장 대신 매년 재검토” 흔들리는 북미 자유무역

‘자동차부품 북미산 82%, 미국산 50%’ 쟁점에 한국 관련 업계 촉각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첫 공동 검토에서 협정 갱신을 거부했다. 협정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 연장 절차가 중단되고 연례 재검토 체제로 전환되면서 북미 공급망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7월 1일(현지시간) 열린 USMCA 첫 공동 검토에서 미국은 현행 협정을 갱신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어 대표는 협정에 ‘실질적인 문제(Substantial Issues)’가 있다며 미국의 대캐나다·멕시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협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USTR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적자는 1,970억달러,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483억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멕시코와 이달 20~24일 3차 양자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캐나다와의 협상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출처: AI 생성 이미지

협정은 유지되지만 ‘자동 연장’은 중지

USMCA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체결돼 2020년 7월 발효된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했다. 협정은 발효 후 16년간 유지되며 6년마다 실시하는 공동 검토에서 3국이 모두 동의하면 다시 16년 연장되는 구조다. 이번 공동 검토는 협정 발효 이후 처음 실시된 절차였다.

미국의 비갱신 통보에 따라 USMCA는 자동 연장 절차에서 벗어나 2036년까지 연례 재검토 체제로 전환된다. 협정은 계속 유지되지만 향후 10년 동안 매년 공동 검토를 실시하며, 그 기간 중 3국이 합의하면 협정은 다시 16년 연장된다. 반대로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협정은 2036년 7월 종료된다.

이번 비갱신의 핵심은 협정 폐기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의 약화에 있다. KOTRA 워싱턴무역관은 7월 1일자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그동안 USMCA를 전제로 공급망과 투자계획을 세웠을 만큼, 앞으로 원산지 규정과 무관세 혜택이 매년 재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USMCA 갱신 거부

 미국, 7월 1일 USMCA 첫 공동 검토에서 갱신 거부 협정은 유지되나 자동 연장 중단	 2036년까지 매년 재검토, 그사이 3국 합의 시 16년 추가 연장도 가능	 미국은 자동차 북미산 부품 비율을 75%→82%로, 이 중 절반은 미국산으로 요구	 한국 자동차 수출의 60%가 북미 지역... 원산지 규정 강화 시 부품 공급망 재조정 불가피
---	--	--	---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미국, '무역적자'와 '원산지 규정' 문제 삼아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 갱신을 거부한 배경에는 무역적자 문제뿐 아니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멕시코를 경유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개방 문제와 함께 자동차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을 핵심 재협상 의제로 제시했다. **자동차의 북미산 부품 비율을 현행 75%에서 82%로 높이고, 50%는 미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중량트럭의 역내가치비율(RVC) 상향과 엔진·변속기·전기차 배터리 등에 적용되는 노동가치비율(LVC) 강화도 검토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내 제조업과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4월 발표한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이행 현황과 시사점'에서 USMCA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경량차량의 RVC를 75%로 높이고 핵심·주요·보조 부품별 원산지 기준과 북미산 철강·알루미늄 사용 비율, 노동가치비율 등을 도입하면서 기업들의 준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USMCA 협정이 갱신되지 않으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북미 지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소비시장인 미국을 포함하는 만큼 세계 완성차 생산의 17.0%, 판매의 22.8%를 차지한다(2023년 기준). 북미 자동차 산업은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캐나다·멕시코를 하나의 생산기지처럼 활용하는 공급망을 구축해 왔다. 하나의 자동차가 생산되기까지 부품이 여러 차례 국경을 넘나드는 구조인 만큼 원산지 규정이 조금만 바뀌어도 생산과 투자 전략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KOTRA가 정리한 현지 업계 반응에서도 협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는 북미 경제 통합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USMCA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리테일산업협회(RILA)는 공급망과 투자계획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회원사들과 함께 협정 틀 유지와 신속한 공동 검토를 촉구했다.

학계와 연구기관의 우려도 잇따른다. KOTRA가 인용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블룸버그, CNBC 등 외신·연구기관 분석을 종합하면, 협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미 북미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동차·농업·소매·에너지 산업에서 원산지 규정과 무관세 혜택이 매년 재검토 대상이 되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자동차 원산지 규정 재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와 고용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 기업도 공급망 재편 부담 커질 전망

한국 기업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IEP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서 북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대미 완성차 수출 비중은 2019년 38%에서 2024년 50%로, 자동차부품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21%에서 35%로 확대됐다.

원산지 규정이 추가로 강화될 경우 한국산 부품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KIEP는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현지 생산 비중이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변수는 원산지 사후검증 강화다. KIEP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원산지 검증 건수가 늘고 있으며, 검증 대상 가운데 약 27%가 위반 판정을 받았다. 원산지 규정이 더 강화되면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뿐 아니라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과 사후검증 대응 역량까지 함께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USMCA 공동 검토를 계기로 북미 통상질서는 매년 결과가 바뀔 수 있는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이게 됐다. 오는 7월 20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원산지 규정을 포함한 쟁점이 어떻게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성은 기자 |

시선,
미국
통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관세 부담이 대폭 상승하며 수출입 기업은 원산지 및 품목분류와 관련된 통관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합법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세 절감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LA총영사관 공익관세사이자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의 글로벌통관연구소장인 앤드류 박(Andrew J. Park) 미국 관세사가 미국 수입통관 등 주요 이슈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해외 수입자 간이통관 막는다” 미국, 수입통관 제도 전면 개편 예고

미 통관 환경의 대전환: EO 14411이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앤드류 박 | ANDREW J. PARK

CHB 대표관세사, LA 총영사관 공익관세사, ICTC 글로벌통상연구소장

미국정부가 통상정책과 세관 집행을 국가안보 및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미국 수입 통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서 2026년 6월 3일 발표된 Executive Order(EO) 14411,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는 단순히 세관 단속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수입통관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수입자(IOR, Importer of Record)의 자격요건부터 세관 보증(Customs Bond), 공급망 검증, 정보공개 의무, 벌금 및 제재 기준에 이르기까지 미국 수입자의 책임과 의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통관 비용 증가뿐 아니라 공급망 관리와 내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체계 구축에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정명령의 배경에는 미국정부가 오랫동안 문제로 인식해 온 세관 집행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추가 관세나 벌금을 실제로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 내 실질적인 자산이나 사업 기반이 없는 명목상의 미국 법인을 이용해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를 회피하거나 관세 납부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서, 이러한 구조 자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 EO 14411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R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미국 내 실질적인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출처: AI 생성 이미지

가장 큰 변화는 미국 수입자(U.S. IOR)와 해외 수입자(Foreign IOR)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U.S. IOR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 실제 사업장과 상당한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는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Foreign IOR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Foreign IOR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간이통관(Informal Entry) 이용이 제한되고 정식통관(Formal Entry)만 가능해질 수 있으며, 더 높은 세관 보증(Customs Bond) 유지, 미국 내 자산 확보, 또는 대테러 세관·무역 파트너십인 CTPAT(Custom-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인증이나 CTPAT 인증 관세사(Customs Broker) 이용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소한의 미국 법인을 활용하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수입구조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도 크게 늘어난다. 실질 소유주(Beneficial Ownership), 계열회사, 미국 내 자산뿐 아니라 공급망 정보, 생산공정, 해외 세관 수출신고 자료 등까지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CBP가 미국 수입신고와 해외 수출신고를 비교해 원산지 조작이나 우회수출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미국, 수입통관 체계 변화 예고

**수입자(IOR) 기준 재정비 미국 내 실제 사업장, 유형자산 보유 등
해외 수입자 규제 강화 간이통관 제한, 미국 내 자산확보 등
정보공개 확대 실질 소유주, 미국 내 자산, 공급망 정보, 해외 세관 수출신고 자료 등
준법 평가 도입 수입자 과거 법규 준수 이력, 관세납부 실적,
계열회사 컴플라이언스 등 평가
벌금·제재 강화 페널티 감경 폭 축소**

또한 CBP는 적격상태 수입자(Good Standing Importer) 제도를 도입해 수입자의 준법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과거 법규 준수 이력, 관세 납부 실적, 계열회사의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Compliance) 수준 등이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Good Standing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은 미국 수입 자체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행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CBP는 저가 신고, 품목분류 오류, 강제노동, 원산지 우회, AD/CVD 회피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감사(Audit), 확정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 압수 및 벌금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통계를 보면 Audit 건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Audit를 통한 세수 회수와 무역 페널티(Trade Penalties)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강화된 집행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

벌금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EO는 페널티 감경(Penalty Mitigation) 기준을 강화해 감경 폭을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반복 위반 기업에는 벌금 감경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사전공시(Prior Disclosure) 제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고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중요한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은 지금부터 미국 수입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현재 IOR 체계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Customs Bond 증가 가능성을 분석하며, 원산지, 품목분류, 과세가격에 대한 내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 생산공정과 원산지 증빙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O 14411은 단기적인 규제 강화가 아니라 미국 통관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투명한 공급망, 체계적인 Compliance 그리고 입증 가능한 Reasonable Care를 갖춘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한국 수출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www.cbp.gov/newsroom/stats/trade

한·ASEAN FTA와 RCEP 누적기준 적용을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답변

협정명	한·ASEAN FTA, RCEP
질문	한·ASEAN FTA와 RCEP 누적기준 적용을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입물품) 적용 대상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해당 원재료가 적용하려는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등은 물품의 수입 사실이나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는 서류로 볼 수 없습니다. (수출물품) 각 회원국 간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를 누적 입증서류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협정상 합의나 운영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여부는 수입국(상대국) 세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FTA 원산지 판정 및 누적

1) 개요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원산지 규정은 경제적 국적(economic nationality)을 의미한다. 대부분 협정에서는 완전생산품, 원산지재료 생산품, 불완전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상품 요건이 있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실무상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해당 협정에 존재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하는 것인데, PSR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원산지 특례기준은 원산지 판정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FTA 원산지 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누적기준을 다뤄보고자 한다.

2) 원산지 특례기준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충족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은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PSR이 존재하고,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 협정 체계상 원산지 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PSR은 해당 품목에 한정해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도의 부속서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반기준은 ①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원칙(공통기준)과 ② 기본원칙 또는 PSR의 엄격성 또는 원산지 결정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분야별 특례규정으로 구성된다. 일반기준의 공통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역내생산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FTA 원산지 특례기준은 공통기준 외에 다양한 예외와 보완적 규정으로, 실제 무역 현장에서 원산지 판정을 더욱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규정이다. 특례규정은 각 협정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적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협정별 규정에 근거해 정확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FTA 원산지 특례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원산지 판정에 유연성을 확보해 협정국 간 무역 및 생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원산지 판정에서 협정상 규정의 경직적인 적용과 지나친 규제로 실제 무역환경에 불합리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누적기준

누적(Cumulation)기준은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뜻을 가져와 체약상대국에서 창출한 요소를 수출국에서 창출된 요소에 쌓아 합산한다는 의미로, 체약상대국에서 생산과정에 투입된 원재료 등을 자국에서 투입한 것에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원산지 영역을 확대해 체약상대국의 역내산 재료 사용 및 역내 가공을 촉진해 상호 무역거래량을 늘리고 시장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대 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재료로 보는 것을 ‘재료누적’이라고 부르고, 외국에서 수행한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을 ‘공정누적’이라고 부른다.

누적기준은 역내에서 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으로 1개국 내 가공원칙을 완화하는 기준이며 결국 상대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나 공정 등을 누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한국산 원산지 재료나 공정 등에 관한 것을 누적이라 부르지 않는다.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나 공정에 관한 입증은 재료누적의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통해, 공정과 같은 입증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등을 통해 진행한다.

누적기준은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HS Code 미변경 물품에 대한 역내산 원재료 입증,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역내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ASEAN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서는 누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한·ASEAN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7조(누적)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RCEP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4조(누적)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3.2조(원산지 상품)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고 다른 당사자에서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를 원산지로 여긴다.
2. 당사자들은 모든 서명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조의 검토를 개시한다. 이 검토는 당사자들에서 수행되는 모든 생산 및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에 제1항의 누적 적용의 확대를 고려할 것이다. 당사자들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검토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그 검토를 마친다.

4) 누적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누적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을 몇 가지 소개한다.

먼저 협정에 따라 재료누적 및 공정누적의 적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ASEAN FTA와 RCEP은 모두 재료누적만 인정된다. 다만, 15개국이 참여한 MEGA FTA로서 누적의 범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넓어질 수 있다. RCEP 제3.4조(누적)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모든 서명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조의 검토를 개시하고, 해당 검토는 당사자들에서 수행되는 모든 생산 및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에 제1항의 누적 적용의 확대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누적 범위의 다른 측면에서 상품누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협정별로 누적의 대상이 '재료'로 한정된 경우가 있고, '상품 또는 재료'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상품누적이 불가능한 협정은 협정 정의상 '상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누적 적용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ASEAN FTA는 상품누적이 불가능해 재료누적만 가능하고, RCEP의 경우 상품 또는 재료의 누적이 적용된다.

그리고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할 때 누적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정별로 확인해야 한다. 협정에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할 때 일방 또는 양당사국(one or both of the Parties)인지 당사

국(a Party) 또는 수출당사국(the exporting Party)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완전 생산기준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완전생산 적용물품에 누적기준 활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국가(누적 적용 국가)에서의 불인정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과거 관세청 사례에 따르면,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고순도 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할 때 재료 누적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누적 기준 중 해당 재료가 '결합'돼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 문의한 바 있고, 관세청에서는 "상품에 결합은 재료와의 단순한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를 상품생산국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품생산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누적기준 적용을 위한 입증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재료누적에 대한 입증서류는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 협정의 원산지증명서가 입증서류로 인정된다.

3. 질문&답변의 해석

1) 질문&답변 사례 개요

한·ASEAN FTA와 RCEP 누적기준 적용을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에 관해 문의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이 생기는 이유는 1개국 다협정 국가에서의 누적기준 입증서류에 대한 문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ASEAN FTA 적용이 가능한 베트남의 경우 해당 협정 외에 한·베트남 FTA, RCEP을 활용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호의 질문사항은 예를 들어 한·ASEAN FTA를 적용해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해 다시 일본으로 수출할 때 RCEP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RCEP의 누적기준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누적기준의 입증서류가 원산지증명서라는 것에는 실무상 이견이 거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같은 국가가 참여하고 있더라도 협정은 각각 개별적인 적용이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 다른 FTA 원산지증명서가 누적기준의 입증서류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2) 누적기준의 입증서류

누적기준의 입증서류에 대해 협정에는 따로 규정된 바 없다. 다만, 결국 FTA 원산지 상품이 됐고, 이것을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든 원재료로 사용하든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원산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누적에 대한 입증서류로 원산지(포괄)확인서, 타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등이 누적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 제조 후 ‘한국산’ 증빙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FTA를 적용한 수입물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FTA에 대한 누적기준을 적용하고자 ‘역내산’ 증빙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질문&답변 사례를 살펴보면, 원산지가 독일인 제품을 우리나라 업체가 수입해 그 물품 원상태로 EU의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국내 납품하는 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세청은 “원산지가 독일인 제품을 우리나라 업체가 수입해 그 물품을 원상태로 EU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납품을 하는 경우 한·EU FTA에 따른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다른 서류를 누적 적용의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과거 우리나라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에서는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증빙서류의 범위에 대해 “해당 협정상 원산지증명서 외에 협정상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원산지 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과거 조세심판 사례(조심 2019관0043, 2019.7.17.)에서는 이러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질의회신)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한·ASEAN FTA 협정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고 한·ASEAN FTA 적용대상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ASEAN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Form D), WTO협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Form A), 비특혜 원산지증명서(Form B)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과는 달리 최근 판례에서는 ‘누적기준’에 따라 베트남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돼 특혜관세대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재인 이 사건 물품은 물론 그 원재료인 이 사건 원재료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결국 누적의 적용을 타협정의 원산지증명서로 하게 되면, 실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 추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누적적용의 입증자료로 다른 증빙자료가 인정된 사례는 해당 조세심판 사례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누적의 적용에 입증된 일반적인 증빙자료인 FTA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참고로 누적적용을 위해 해당 원재료가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관세청 사례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국산 재료를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누적적용을 위해서 한국산 재료가 중국에 수입될 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한국산 재료를 수입해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당 재료가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및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입 시 해당 재료가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3) 질문&답변 사례 해석

이번 질문의 답변에서 관세청은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에 대한 누적기준 적용 서류의 인정기준을 달리 안내했다. 일단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해당 원재료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는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될 수 있으나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등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는 서류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FTA의 이행상 우리나라의 판단 기준이고, 수입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누적적용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 과세관청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는 누적입증서류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물품에는 우리나라의 과세관청에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좁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물품과 관련해 각 회원국 간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를 누적 입증서류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협정상 합의 또는 운영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며,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여부는 수입국(상대국) 세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실제 RCEP의 발효과정에서 누적기준의 입증서류에 대한 범위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고 결국 각 수입 관세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RCEP 원산지소위원회에서의 참여국 간 체결한 개별 협정 적용 물품도 RCEP 활용 시 누적기준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개별 협정 적용 원재료도 RCEP 누적을 허용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 기준으로 작성·발급받아야 하나, 중국, 베트남 등 2개 협정이 동시 발효된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은 1건의 수출신고에 대해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을 명문화한 바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심사와 관련해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양허품목인지를 심사

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원산지 누적 적용을 위해 양허품목이 아니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복수 협정이 체결돼 있는 국가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도 복수의 특혜(FTA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실무상 대부분 국가는 복수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복수발급이 불가능하다.

누적기준의 활용은 재료누적, 공정누적에 대한 자료수집 및 협정별 누적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즉,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와 같은 서류로 원재료 내역을 검토하고, 기본적으로는 제조공정을 확인해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협정별 누적기준의 적용범위를 확인해 실제 누적 적용이 가능한지, 누적 적용에 대한 입증서류(원산지증명서 등)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특송화물 / 가공한 꽃의 수입요건

**생화를 특수 보존 처리한 프리저브드 플라워(preserved flower)를
구매대행하려 합니다. 통관 가능한가요?**

구매대행이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고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대행물품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고, 수입자는 물품의 구매자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자를 기준으로 수입요건과 통관가능 여부를 검토하며,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또는 등록절차 등에 대해서는 물품(HS Code)별 수입요건의 개별 법령에 따른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관련 부처로 문의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물품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법」 관련 물품

해외 직구(수입) 시 개인 특송물품의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HS Code 제0603.90-000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호에 분류되는 경우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검역 대상 물품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방부처리되거나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드라이 플라워,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완벽하게 가공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등 현품확인을 통해 검사대상 및 제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개별 통관 건마다 식물검역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역과 관련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1000, 1062) 등 소관부처에 문의해 정확히 안내받기 바랍니다.

세관에서는 개별 법령 등에서 수입을 위한 자격, 승인, 허가, 추천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만 확인할 뿐, 요건구비 대상 여부 및 구비절차 등은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TA /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과 관련해 문의합니다.
한국에서 생산됐으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제11란(원산지)에 'KR' 기재가 가능한지,
또는 공란으로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에 따르면, 제11란(원산지) 기재 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원산지 국가를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하려는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해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KR'로 기재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미충족하는 경우 제10란(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중 미충족란에 '√' 표시하고, 제11란에 물품의 실제 원산지를 기재('KR' 기재 불가)하거나, 미상으로 기재해야 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품목분류 / 퓨즈의 HS Code

자동차용 저전압·고전압 퓨즈의 HS Code가 궁금합니다.

문의한 물품이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에 해당된다면 제8536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세분류로 '퓨즈'에 해당된다면 제8536.1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8536.10호에서 세분류로 '관형(Of tube-type)'인지에 따라 이하 세번으로 분류되며, 제8536.10호에 해당되는 물품 중 관형의 형태가 아니라면 제8536.10-9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품목분류 시 본질적 특성과 관련한 판례 분석

김민주 |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쟁송팀)

1. 들어가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는 관세율 결정의 전제가 되는 핵심 절차다.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어느 호에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는 단순한 기술적 판단을 넘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품목분류 시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분류과정에서는 물품이 여러 기능을 수행하거나, 어느 호의 문언에도 명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물품명이나 거래상 명칭만으로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렵고,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과 기능, 용도, 성분,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정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 문언에 따라 분류하되, 해당 물품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삼아 분류할 것을 실시했다. 특히 일부 판례에서는 사실상 ‘본질적 특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분류를 좌우하는 핵심 성질, 특히 주된 기능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한 사례가 확인된다.

이번 호에서는 본질적 특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주요 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품목분류 실무상의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 관련 법령

■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 제7항(제195조 제2항과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류·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호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중략> ...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3. '본질적 특성'의 의의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이 되는 기준은 관세율표로, HS해설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을 위한 지침으로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관세율표와 HS해설서를 살펴보면, 복합재질 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기준은 결국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다.

실제로 관세율표 및 HS해설서는 전반에 걸쳐 여러 곳에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기준으로 품목분류가 이뤄짐을 전제로 하고 있다.

● HS해설서 중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도록 설명한 부분(일부 발췌) ●

류 및 호의 용어	류의 총설 및 호 해설
제9류 커피·차·마테·향신료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이 류의 주 제1호 가목이나 나목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 을 유지하는 한, 그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05호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약간 변성한 라놀린 중 라놀린의 본질적인 특성 을 가지고 있는 것과 울 알코올(wool alcohol)(콜레스테롤·아이소콜레스테롤과 그 밖의 고급 알코올의 혼합물로 라놀린 알코올이라고 불리어진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
제3824호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탄과 모래나 점토의 혼합물로서, 그 본질적인 특성 이 이탄(peat)에 의해서 주어진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 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이 류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료나 반제품 상태의 고무[가황이나 경질(硬質: hard)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특성 이 고무로부터 유래된 물품(이 류의 주 제2호의 제외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목재와 플라스틱(plastic)의 층으로 구성되는 건축용 패널(panel)은 대개 이 류에 분류한다. 이들 패널(panel)의 분류는 용도상 본질적인 특성 을 부여하는 외부표면에 의해 결정한다.
제5603호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봉제·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 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
제6807호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 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금속으로 피복·보강한 아스팔트로 만든 관(管)과 용기는 그 구성요소가 제품에 부여하는 본질적인 특성 에 따라 금속제품이나 아스팔트 제품으로 분류한다.
제7020호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다른 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 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류 및 호의 용어	류의 총설 및 호 해설
제7323호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이들 물품이 본질적으로 금속 제품의 특성 을 가지고 있는 한, 섬유재료로 짜여 졌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제8481호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압력계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 감압밸브는 그 결합물품이 탭·밸브 등의 본질적인 특성 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호나 제9026호에 해당한다.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불완전하거나(incomplete) 미완성(unfinished)의 차량이라도 차량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 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하는 완전하거나 완성된 차량으로 분류 한다.

4. 판례 분석

가. 서울고등법원 2025.1.8. 선고 2023누71089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자동차 센터페시아(차량 대시보드 중앙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되는 컨트롤 패널 부분)에 부착돼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오디오, 에어컨, 히터, 전화 수·발신 기능 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문자, 부호, 특정 형상의 이미지로 제공하는 LCD 모듈의 품목분류가 문제된 사안이다.

원고는 해당 물품이 제8531호의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 중 액정디바이스(LCD)가 결합된 표시반 또는 그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해당 물품이 제8528호의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중 기타’에 해당한다고 봤다.

● 품목번호와 관련한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구분	품목번호	호의 용어
원고	제8531호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피고	제8528호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관세율표가 법률 사항임을 전제로 하면서, 관세율표상 여러 문언에서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관세율표에 따른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서는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이 자동차 센터페시아에 부착돼 자동차의 상태 등에 관한 신호, 즉 시각정보 등을 LCD에 표시하는 물품이라고 봤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자동차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또는 DMB 등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을 표시하는 기능이 아니라, 대상물인 자동차의 상태 등에 관한 신호를 LCD에 표시하는 기능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이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또는 DMB 등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서울고등법원 2025.1.8. 선고 2023누71089 판결 ●

「관세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관세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표는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상품품목표와 각 품목마다의 관세율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표는 시행령 등이 아닌 법률 사항으로, 그중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전단),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가목 단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2부 제9류 주 제1호), “고무나 고무 혼합물이 원재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제7부 제40류 주 제5호 나목), “그 일부분이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71류로 분류한다”(제8부 제42류 주 제3호 나목 단서), “특정한 선박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8906호로 분류한다”(제17부 제89류 주 제1호),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제20부 제95류 주 제4호 단서) 등 문언을 고려하면, 관세율표에 따른 수입물품 품목분류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중략> ...

이 사건 물품은 자동차 센터페시아에 부착되어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오디오, 에어컨, 히터, 전화 수발신 기능의 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문자, 부호, 특정 형상의 이미지로 제공한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23, 38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본질적인 특성은 이 사건 물품이 부착된 대상물(자동차)의 상태등에 관한 신호(시각 정보 등)를 LCD에 표시하는 것으로, 이는 원고 주장 HSK 품목번호 제8531.20-1000호[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중 액정디바이스(LCD)가 결합된 표시반, 또는 그 부분품(제8531.90-2000호)] 의미에 부합한다

... <중략> ...

이 사건 물품이 자동차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또는 DMB 등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을 표시하는 기능은 어디까지나 운전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할 뿐 이를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이거나 주된 기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소리 등의 방법으로 있는 그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 정보 전달하기이지 정보와 자동차 운전자 중간에서 가공·편집하거나 처리된 정보를 전달하기가 아니며), 소리 등의 방법으로 있는 그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 정보 전달하기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부수적인 기능이 존재한다고 하여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대상물(자동차)의 상태 등에 관한 신호(시각정보 등)를 LCD에 표시하는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달라진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판례의 의미

이 판결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른 분류에서도 물품의 본질적 특성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물품의 경우, 법원은 단순히 부수적 기능의 존재만을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 물품이 **실제로 어떤 주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나. 부산고등법원 2017.6.23. 선고 2016누24106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Hollywood 48-Hour Miracle Diet’라는 제품의 품목분류가 문제된 사안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이 그 용도와 기능, 구성성분의 역할, 판매가격, 소비자들의 인식, 제조원가 중 농축주스 등 주스류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혼합주스 기타’가 아니라 제 2106.90-9099호의 ‘식이보조제로 칭해지는 조제품’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해당 제품이 제2009.90-1090호의 ‘혼합주스 기타’에 해당한다고 봐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 품목번호와 관련한 원고 및 피고 주장 ●

구분	품목번호	호의 용어
원고	제2106.90-9099호	기타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피고	제2009.90-1090호	기타의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 법원의 판단

부산고등법원은 관세율표 제2009호 및 제2106호의 문언과 HS해설서 통칙 제3호 나목의 기준을 검토했다. 법원은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도록 돼 있고,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는 그 성질, 용적, 수량, 중량, 가격 또는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제품이 농축주스, 과실퓨레, 정제수, 비타민류, 정유 등을 혼합해 제조된 물품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제품은 일반 과실주스와 달리 단기간 집중적인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방법으로 음용하도록 돼 있었고, 비타민류와 정유가 일반 과실주스에 비해 월등히 다량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 제품에 포함된 비타민류와 정유가 주된 역할을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은 과실주스에 비타민류와 정유를 첨가함으로써 과실주스가 가진 주요 특성이 유의미하게 변화된 물품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제품이 과실농축액을 기제로 비타민류 및 철화합물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해지는 조제품’에 가깝다고 봐, 제2009.90-1090호의 ‘혼합주스 기타’로 분류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부산고등법원 2017. 6. 23. 선고 2016누24106 판결 ●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짓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중략>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제품은 과실주스에 그것과 성질, 용량, 가격이 상이한 비타민류와 정유를 첨가함으로써 과실주스가 가진 주요특성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할 때에도 다이어트 식이보조제의 용도로 음용됨으로써 일반 과실주스를 음용할 때와는 달리 이 사건 제품에만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류와 정유, 그리고 일반 과실주스에 비해 월등히 다량으로 포함된 비타민류 등이 주된 역할을 한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은 과실농축액을 기제로 비타민류 및 철화합물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또한 이 사건 제품이 단기간의 집중적인 다이어트를 하려는 수요자에 의해 제한된 기간 동안, 제한된 용량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가격도 일반 과실주스에 비하여 상당히 고가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관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이 사건 제품을 신고한 후 관세율이 높은 과실주스 용도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품은 관세율표상 제2106.90-9099호의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판례의 의미

이 판결은 성분 중 특정 원재료의 함량만으로 본질적 특성을 판단하지 않고, **해당 성분이 물품의 용도와 기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과실주스 성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비타민류와 정유의 첨가로 물품의 주요 특성이 유의미하게 변경됐다면 주스가 아니라 식이보조제 성격의 조제품으로 볼 수 있음을 뜻한다.

5. 시사점 및 맺음말

첫째, 본질적 특성에 관한 판단은 물품명이나 거래상의 명칭이 아닌,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때 납세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거래상 명칭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물품의 주요 특성·기능·용도·성분·구성·가격·사용방식 등을 종합해 물품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71089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자동차 센터페시아용 표시반에 대해 영상 표시 기능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니터 부분품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원은 해당 물품이 자동차의 상태 등에 관한 신호를 LCD에 표시하는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는 물품 일부의 기능이 아니라 물품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품목분류가 이뤄져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된 물품에서는 구성요소의 함량뿐 아니라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부산고등법원 2016누24106 판결에서 문제된 제품은 농축주스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해당 물품에 비타민류와 정유가 첨가되면서 과실주스의 주요 특성이 유의미하게 변화됐다고 봤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라 살펴보건대, 본질적 특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한 성분비나 물리적 구성만이 아니라, 해당 구성요소가 물품의 기능과 용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실제 실무에서는 구성성분의 함량 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성분의 수행 역할까지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칙 제1호 단계의 본질적 특성 판단과 통칙 제3호 나목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판단은 구별하되, 양자는 실무상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통칙 제1호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류의 주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해당 물품이 어느 호의 문언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물품의 객관적 성질과 주된 기능을 확인한다.

반면 통칙 제3호 나목은 두 개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혼합물, 복합물 또는 세트물품에 대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규정이다. 즉 본질적 특성 판단은 통칙 제3호 나목에만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며, 통칙 제1호 단계에서도 호의 문언에 가장 부합하는 특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품목분류 실무에서 납세자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단순한 제품명이나 거래명세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물품의 기능과 구성요소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한다. 과세관청 역시 품목분류를 판단할 때 특정 성분의 함량이나 일부 기능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 과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본질적 특성에 대한 판단은, 관세율표의 문언과 실제 물품 사이를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관세율표상 어느 호의 문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표면적인 명칭이 아니라, 그 물품을 그 물품답게 만드는 핵심 성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관세율표의 체계와 품목분류의 객관성을 조화시키는 합리적인 방향이라 할 것이다.

사료용일까vs.조제 식료품일까? 애견용 간식의 HS Code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마트의 반려동물 간식코너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사람이 먹는 디저트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엄선된 원료와 깔끔한 포장을 자랑하는 제품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특히 웰빙 간식의 대명사인 ‘고구마 말랭이’는 이제 강아지용과 사람용의 경계가 무색할 정도로 비주얼과 제조공정이 닮았다.



품목분류 사례와 상관 없음(출처: AI 생성 이미지)

하지만 내용물은 똑같은 고구마 말랭이일지라도 「관세법」상 품목분류에서는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이 고구마 말랭이가 누구의 입으로 들어가느냐 혹은 어떤 성분이 첨가됐느냐에 따라 사료나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삶은 고구마를 직사각형 형태로 절단해 건조시킨 것으로 애견용 간식을 목적으로 제조됐다.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c) 특히 **성분의 성질·순도와 비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된 지시사항**이나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그 밖의 정보를 고려해볼 때 동물사료용이나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특히, 제1901호와 제2106호)

즉, 성분·위생조건·포장에 표시된 정보 등이 식용제품과 차이가 있어야 제2309호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음의 사례를 확인해 보자.

물품 설명	분류세번	특징
껍질을 벗긴 고구마를 막대 모양 (길이: 4~10cm, 두께: 약 1cm)으로 절단한 후 열처리해 익힌 것	제2309.10호	애견용 소매포장 제품
	제2008.99호	제시된 물품의 포장상태 및 제조상태 등을 볼 때 본 물품이 동물사료 등으로 사용된다고 판단할 수 없음 .

본 물품의 경우 애견 간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나 포장 상태 등으로 봐 애견용 제품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제2309호로 분류할 수 없었다.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안젤리카(angelica)·암·고구마·홉순(hop shoot)·포도나뭇잎·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을 예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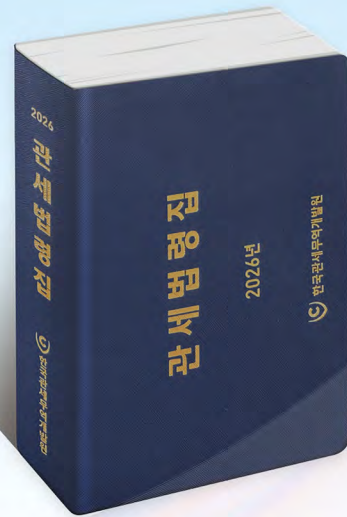
따라서, 본 물품은 삶은 건조 고구마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Dog food, put up for retail sale	제2309.10-1000호 (FCN 1%)	Sweet potato, cooked and dried	제2008.99-9000호 (FCN 36%)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 등 신규 수록
-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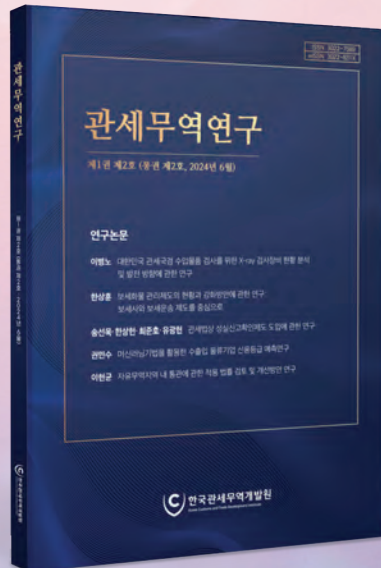


후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